

정정신고(보고)

2019년 10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집합투자규약
삼성ELS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HE-1호[주식-파생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07.18

3. 정정 내용

- 개인연금 클래스(C-P,C-Pe,S-P) 개설
- 환매수수료 삭제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제1조(목적 및 종류 등)	<신 설>	⑤이 투자신탁의 C-P클래스, C-Pe클래스 및 S-P클래스 수익증권은 소득세법 제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전용 수익증권으로 가입자격 및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생략) 1.~7.(생략) (추 가)	①(생략) 1.~7.(생략) 8. C-P 클래스 수익증권 9. C-Pe 클래스 수익증권 10. S-P 클래스 수익증권
제20조(수익증권의 판매기준·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등)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7.(생략) (추 가)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7.(생략) 8. C-P 클래스 수익증권: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p>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 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p> <p>9. C-Pe 클래스 수익증권: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 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p> <p>10. S-P 클래스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 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p>
제23조(환매수수료)	<p>①이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의 수익증권은 환매수수료를 징구한다.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해당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 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을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10%</p>	<p>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p>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p>③판매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p>	
제40조(투자신탁보수)	<p>③(생략) 1.~7.(생략) (추 가)</p>	<p>③(생략) 1.~7.(생략) 8. C-P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3.0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8.0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9. C-Pe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3.0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4.0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10. S-P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3.0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0.16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p>
제52조 (수익증권의 통장거래)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 수익증권저축약관”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 수익증권저축약관” (C-P클래스, C-Pe클래스 및 S-P클래스의 경우에는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부칙	<p>신 설</p>	<p>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C-P, C-Pe, S-P 클래스 추가 및 환매수수료 삭제)</p>